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5호 2022. 12. 20.(화)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8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남해군 규칙 제1219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5
 남해군 규칙 제122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2호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의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 1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6
 남해군 고시 제2022-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7
 남해군 고시 제2022-15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8
 남해군 고시 제2022-16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22
 남해군 고시 제2022-161호 평산2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승인 고시 2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602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26
 남해군 공고 제2022-1627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37
 남해군 공고 제2022-1669호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9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제2022-169호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2

회 략									
-----	--	--	--	--	--	--	--	--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8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 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 로 하고, “사무과” 를 “의회사무과”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무과장” 을 “의회사무과장”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의회사무과 사무분장표(제4조 관련)

구 분	담 당 사 무
의 회 사 무 과 (사무과장)	(의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 조직관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직원 교육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 의원 국내·외 연수 및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등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의회 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소식지 및 의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의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청원,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의회경비,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구 분	담 당 사 무
	<p>(정책지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등의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 ○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의원발의 의안 작성 및 기초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 및 의회 관련 정책 개발 ○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 지원 ○ 주민조례발안 업무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 업무수행의 지휘 및 감독 ○ 의원 군정질문, 5분 발언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제공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총괄 관리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남해군 규칙 제1219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직무대리”라 한다.

제2조 본문 중 “기타사고”를 “그 밖의 사고”로, “대리”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를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를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6인”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위원장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어느 하나에 규정에 의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호의 경우에는” 를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임기만료에 의한” 을 “임기만료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조치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환수금액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을 “임기만료로” 로,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을 “국외여비 예산편성은” 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남해군의회” 을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해군의회” 를 각각 “의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계획에 의한” 을 “계획에 따른” 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남해군의회” 를 “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남해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를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3의 서식에 의한” 을 “별표3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4의 서식에 의한” 을 “별표4의 서식에 따른” 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를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 을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를 “근무상황카드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을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로,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를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를 “출장신청서에 따라” 로 한다.

제6조(「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 13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을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 을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7조에 따라” 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를 “제1항제1호를”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조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로 한다.

제9조 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를 “제9조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9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등에 의하여” 를 “등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11조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 중 “제8조의 규정을” 를 “제8조를” 로 한다.

제7조(「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 을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인” 을 “1명” 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를 “영 제64조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을 “제8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 를 “실시할 때”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27조

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항 부터 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때” 를 “이 경우”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각종시험요구 시의” 를 “각종 시험 요구 시의”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을 각각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른”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6조에 따라” 로,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대학졸업자	6급 · 7급 ·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 8급 ·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같은 조 제6항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의 규정에 따른다.” 를 “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 및” 을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와”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5조의제2제1항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0조제1항과 제3항 중 “의 규정에 따른”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1조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의 규정에 따른”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따른”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5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7조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9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를 “제61조에” 로 한다.

제8조(「남해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 를 “제59조” 로 한다.

제3조 중 “적절한 기간” 을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9조(「남해군의회 포상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칙에 의한” 을 “규칙에 따른” 으로, “군의회” 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 중 “남해군의회 의장” 을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군의회” 를 “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 을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로 하고, “남해군의회 의장” 을 “의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회” 를 “의회” 로 한다.

제10조(「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 을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을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회” 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 을 “제72조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34조 중 “발언에 의하여” 를 “발언으로” 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을 “법” 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과 제2항 중 “제65조제1항” 을 각각 “제75조제1항” 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94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22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지방행정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행정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2호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의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의 정원배정 규정 일괄개정훈령을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의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의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금전천(지방하천)
- 2.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장
-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번지
- 4. 점용목적 : 한전주 신설
- 5. 점용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1821인근)
- 6. 점용면적 : 0.125㎡
- 7. 점용기간 : 2022. 12. 6.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22-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서상천(지방하천)
2.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장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62번지
4. 점용목적 : 한전주 신설 3개소
5. 점용위치 : 남해군 서면 대정리 1713(672-15인근)
6. 점용면적 : 0.41㎡
7. 점용기간 : 2022. 12. 6.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22-15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13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13411	도근점	중부	247735.741	293232.878	106.826	034°49'18.42594"	128°01'08.66154"	20221006	철재	삼동면 금송리 산73-8	남해군정
2	13412	도근점	중부	247811.129	293131.210	89.826	034°49'18.90544"	128°01'04.69164"	20221006	철재	삼동면 금송리 산73-6	남해군정
3	13413	도근점	중부	247794.218	293092.396	85.185	034°49'18.36952"	128°01'03.15778"	20221006	철재	삼동면 금송리 산122	남해군정
4	18279	도근점	중부	260679.340	282934.987	12.605	034°56'19.60507"	127°54'28.10784"	20221011	철재	설천면 문의리 산92-7	남해군정
5	18280	도근점	중부	260648.124	283068.103	3.725	034°56'18.55301"	127°54'33.34162"	20221011	철재	설천면 문의리 322-12	남해군정
6	18281	도근점	중부	260636.943	283211.831	4.181	034°56'18.14781"	127°54'39.00062"	20221011	철재	설천면 문의리 321-4	남해군정
7	11382	도근점	중부	245728.420	289490.126	61.508	34° 48' 12.50497"	127° 58' 40.63612"	20221012	플라스틱	이동면 난음리 294-14	남해군정
8	11383	도근점	중부	245680.599	289497.833	56.677	34° 48' 10.95095"	127° 58' 40.92096"	20221012	플라스틱	이동면 난음리 205-2	남해군정
9	11384	도근점	중부	245462.789	289497.503	35.001	34° 48' 3.88395"	127° 58' 40.82451"	20221012	철재	이동면 난음리 951-2	남해군정
10	18282	도근점	중부	258654.711	283293.709	144.879	034°55'13.80800"	127°54'41.51521"	20221012	철재	설천면 금음리 산166	남해군정
11	18283	도근점	중부	258624.688	283355.105	132.507	034°55'12.81572"	127°54'43.92299"	20221012	철재	설천면 금음리 산65	남해군정
12	18284	도근점	중부	258605.468	283426.838	120.963	034°55'12.17088"	127°54'46.74178"	20221012	철재	설천면 금음리 1449	남해군정
13	18285	도근점	중부	258563.179	283453.107	112.161	034°55'10.79100"	127°54'47.76141"	20221012	철재	설천면 금음리 산62-2	남해군정
14	15306	도근점	중부	241771.799	279034.134	106.548	34° 46' 7.23585"	127° 51' 47.99237"	20221018	플라스틱	남면 평산리 687	남해군정
15	15307	도근점	중부	241768.744	279010.891	100.048	34° 46' 7.1432"	127° 51' 47.0774"	20221018	플라스틱	남면 평산리 687	남해군정
16	15308	도근점	중부	241800.854	279031.139	107.879	34° 46' 8.17944"	127° 51' 47.88442"	20221018	플라스틱	남면 평산리 산80-1	남해군정
17	15309	도근점	중부	242157.436	278739.266	12.542	34° 46' 19.83085"	127° 51' 36.52779"	20221019	철재	남면 평산리 300-2	남해군정
18	15310	도근점	중부	242146.630	278835.907	12.640	34° 46' 19.45335"	127° 51' 40.32428"	20221019	철재	남면 평산리 302-10	남해군정
19	15311	도근점	중부	242202.362	278914.807	9.421	34° 46' 21.23974"	127° 51' 43.44562"	20221019	철재	남면 평산리 2429	남해군정
20	10371	도근점	중부	246976.454	281715.763	96.646	034°48'55.35071"	127°53'35.25584"	20221019	철재	남해읍 평리 582-1	남해군정
21	10372	도근점	중부	246908.525	281722.420	107.898	034°48'53.14470"	127°53'35.49396"	20221019	철재	남해읍 평리 582-2	남해군정
22	10373	도근점	중부	246845.861	281748.508	114.815	034°48'51.10392"	127°53'36.49835"	20221019	철재	남해읍 평리 585-1	남해군정
23	18286	도근점	중부	259900.053	280146.743	53.379	034°55'55.12724"	127°52'37.97764"	20221019	철재	설천면 덕신리 429	남해군정
24	18287	도근점	중부	259880.097	280120.157	45.531	034°55'54.48731"	127°52'36.92331"	20221019	철재	설천면 덕신리 459-1	남해군정
25	18288	도근점	중부	259805.906	280125.104	34.514	034°55'52.07869"	127°52'37.09261"	20221019	철재	설천면 덕신리 468-1	남해군정
26	10374	도근점	중부	247789.598	280012.441	104.905	034°49'22.22156"	127°52'28.52135"	20221020	철재	남해읍 평현리 1296-1	남해군정
27	10375	도근점	중부	247790.124	280066.407	94.492	034°49'22.22334"	127°52'30.64491"	20221020	철재	남해읍 평현리 1429-4	남해군정
28	10376	도근점	중부	247778.430	280098.057	87.938	034°49'21.83497"	127°52'31.88621"	20221020	철재	남해읍 평현리 950-1	남해군정
29	10377	도근점	중부	247742.313	280091.534	91.317	034°49'20.66493"	127°52'31.61715"	20221020	철재	남해읍 평현리 1293-2	남해군정
30	18289	도근점	중부	259196.600	283105.324	118.368	034°55'31.44580"	127°54'34.28826"	20221021	철재	설천면 남양리 127-4	남해군정
31	18290	도근점	중부	259244.048	283134.712	125.248	034°55'32.97663"	127°54'35.46299"	20221021	철재	설천면 남양리 124-1	남해군정
32	18291	도근점	중부	259286.460	283145.513	127.301	034°55'34.34954"	127°54'35.90368"	20221021	철재	설천면 남양리 120	남해군정
33	18292	도근점	중부	259259.433	283055.488	133.079	034°55'33.49919"	127°54'32.34748"	20221021	철재	설천면 남양리 283	남해군정
34	18293	도근점	중부	259265.471	282987.245	142.416	034°55'33.71520"	127°54'29.66117"	20221021	철재	설천면 남양리 산8	남해군정
35	18294	도근점	중부	255734.656	282960.123	31.231	034°53'39.16164"	127°54'27.33164"	20221026	철재	설천면 진목리 1471-3	남해군정
36	18295	도근점	중부	255736.635	282993.491	31.386	034°53'39.21603"	127°54'28.64636"	20221026	철재	설천면 진목리 1391	남해군정
37	10378	도근점	중부	248505.242	281036.148	35.595	034°49'45.15053"	127°53'09.04904"	20221028	철재	남해읍 평현리 728-15	남해군정
38	10379	도근점	중부	248458.591	281054.248	33.579	034°49'43.63168"	127°53'09.74506"	20221028	철재	남해읍 평현리 731	남해군정
39	10380	도근점	중부	248466.203	280985.964	40.766	034°49'43.89822"	127°53'07.06080"	20221028	철재	남해읍 평현리 646-2	남해군정
40	10381	도근점	중부	248507.643	280965.280	42.606	034°49'45.24875"	127°53'06.26128"	20221028	철재	남해읍 평현리 716-3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41	16450	도근점	중부	251655.189	276142.808	34° 51' 28.71731"	127° 49' 57.52724"	20221101	서면 노구리 35-5	철재	남해군정	
42	16451	도근점	중부	251625.746	276177.695	34° 51' 27.75258"	127° 49' 58.89088"	20221101	서면 노구리 산121-6	철재	남해군정	
43	16452	도근점	중부	251623.119	276237.404	34° 51' 27.65123"	127° 50' 1.24037"	20221101	서면 노구리 산122	철재	남해군정	
44	10382	도근점	중부	248458.591	281054.248	034°49'43.63168"	127°53'09.74506"	20221102	남해읍 아산리 1088-1	철재	남해군정	
45	10383	도근점	중부	248466.203	280985.964	034°49'43.89822"	127°53'07.06080"	20221102	남해읍 아산리 1088	철재	남해군정	
46	10384	도근점	중부	248507.643	280965.280	034°49'45.24875"	127°53'06.26128"	20221102	남해읍 아산리 1110-1	철재	남해군정	
47	10385	도근점	중부	250974.167	281266.207	034°51'05.19311"	127°53'18.96253"	20221107	남해읍 삼천리 1056-16	철재	남해군정	
48	10386	도근점	중부	250888.510	281219.345	034°51'02.42731"	127°53'17.08818"	20221107	남해읍 삼천리 1054	철재	남해군정	
49	10387	도근점	중부	250949.101	281183.356	034°51'04.40363"	127°53'15.69277"	20221107	남해읍 삼천리 1056-16	철재	남해군정	
50	17469	도근점	중부	256109.870	276289.342	034°53'53.21883"	127°50'04.75610"	20221110	고현면 갈화리 1719	철재	남해군정	
51	17470	도근점	중부	256163.242	276340.614	034°53'54.93675"	127°50'06.79286"	20221110	고현면 갈화리 1706-5	철재	남해군정	
52	17471	도근점	중부	256266.612	276250.215	034°53'58.31523"	127°50'03.26664"	20221110	고현면 갈화리 1733-3	철재	남해군정	
53	16453	도근점	중부	253546.284	276560.913	034°52'29.96475"	127°50'14.60728"	20221111	서면 중현리 산150-13	철재	남해군정	
54	15315	도근점	중부	245212.602	279208.878	034°47'58.83165"	127°51'56.02952"	20221114	남면 상가리 산92-2	철재	남해군정	
55	15316	도근점	중부	245134.680	279208.528	034°47'56.30341"	127°51'55.98935"	20221114	남면 상가리 1320	철재	남해군정	
56	15317	도근점	중부	245067.334	279256.417	034°47'54.10483"	127°51'57.85022"	20221114	남면 상가리 산170-6	철재	남해군정	
57	15318	도근점	중부	244983.652	279117.825	034°47'50.07557"	127°51'52.37036"	20221114	남면 상가리 1273	철재	남해군정	
58	15319	도근점	중부	244941.788	279097.745	034°47'50.07557"	127°51'51.56637"	20221114	남면 상가리 1271	철재	남해군정	
59	15320	도근점	중부	244915.963	279137.773	034°47'49.22644"	127°51'53.13208"	20221114	남면 상가리 1271	철재	남해군정	
60	15312	도근점	중부	238724.463	279427.731	034°44'28.24777"	127°52'02.43478"	20221114	남면 선구리 1371	철재	남해군정	
61	15313	도근점	중부	238681.842	279353.057	034°44'26.88571"	127°51'59.48508"	20221114	남면 선구리 산28	철재	남해군정	
62	15314	도근점	중부	238644.314	279275.886	034°44'25.68959"	127°51'56.43899"	20221114	남면 선구리 산32-5	철재	남해군정	
63	10388	도근점	중부	250161.199	280702.833	034°50'38.97641"	127°52'56.50662"	20221117	남해읍 아산리 1056-3	철재	남해군정	
64	10389	도근점	중부	250236.182	280636.124	034°50'41.42838"	127°52'53.90715"	20221117	남해읍 아산리 1115-2	철재	남해군정	
65	10390	도근점	중부	249645.508	280422.933	034°50'22.32364"	127°52'45.31281"	20221117	남해읍 아산리 714	철재	남해군정	
66	10391	도근점	중부	249642.506	280310.163	034°50'22.25830"	127°52'40.87378"	20221117	남해읍 아산리 1435-4	철재	남해군정	
67	10392	도근점	중부	249586.222	280326.570	034°50'20.42738"	127°52'41.50009"	20221117	남해읍 아산리 688-3	철재	남해군정	
68	19552	도근점	중부	254921.781	289546.415	034°53'10.77388"	127°58'46.38311"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516-10	철재	남해군정	
69	19553	도근점	중부	254693.662	289730.259	034°53'03.31402"	127°58'53.53401"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527-2	철재	남해군정	
70	19554	도근점	중부	254766.040	289797.085	034°53'05.64113"	127°58'56.19317"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산30-10	철재	남해군정	
71	19555	도근점	중부	254797.492	289864.229	034°53'06.64025"	127°58'58.84913"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산30-20	철재	남해군정	
72	19556	도근점	중부	254927.678	289948.342	034°53'10.8374"	127°59'02.21141"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472-2	철재	남해군정	
73	19557	도근점	중부	255076.770	290016.896	034°53'15.65292"	127°59'04.96846"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461-2	철재	남해군정	
74	19558	도근점	중부	255178.263	290019.377	034°53'18.94513"	127°59'05.10543"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445-2	철재	남해군정	
75	19559	도근점	중부	255297.058	290030.247	034°53'22.79605"	127°59'05.57945"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산 2-5	철재	남해군정	
76	19560	도근점	중부	254953.974	289808.693	034°53'11.73507"	127°58'56.72282"	20221118	창선면 서대리 468-5	철재	남해군정	
77	17472	도근점	중부	257020.065	280927.451	034°54'21.45900"	127°53'07.73236"	20221121	고현면 남치리 803-2	철재	남해군정	
78	17473	도근점	중부	257123.827	280958.911	034°54'24.81665"	127°53'09.00758"	20221121	고현면 남치리 811	철재	남해군정	
79	17474	도근점	중부	257253.337	281051.019	034°54'28.99233"	127°53'12.68055"	20221121	고현면 남치리 820-5	철재	남해군정	
80	16454	도근점	중부	252354.866	275009.882	034°51'51.72298"	127°49'13.15661"	20221122	서면 노구리 827	철재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위도	경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81	16455	도근점	중부	252283.599	66.116	034°51'49.39287"	127°49'15.75461"	20221122	서면 노구리 821-2	철재	남해군정	
82	16456	도근점	중부	252398.782	63.933	034°51'53.14551"	127°49'13.52529"	20221122	서면 노구리 827-1	철재	남해군정	
83	16457	도근점	중부	252373.978	59.832	034°51'52.33300"	127°49'14.65923"	20221122	서면 노구리 827-1	철재	남해군정	
84	16458	도근점	중부	252298.056	57.665	034°51'49.85058"	127°49'17.44438"	20221122	서면 노구리 1082	철재	남해군정	
85	19561	도근점	중부	250684.452	68.739	034°50'53.30475"	127°58'42.98377"	20221124	창선면 지족리 산140	철재	남해군정	
86	19562	도근점	중부	250660.959	60.599	034°50'52.55728"	127°58'41.13965"	20221124	창선면 지족리 산138-1	철재	남해군정	
87	19563	도근점	중부	250619.921	57.708	034°50'51.22243"	127°58'41.53574"	20221124	창선면 지족리 산138-1	철재	남해군정	
88	19564	도근점	중부	250580.876	48.738	034°50'49.96669"	127°58'40.1143"	20221124	창선면 지족리 산138-1	철재	남해군정	
89	19565	도근점	중부	250569.300	37.687	034°50'49.60741"	127°58'38.10631"	20221124	창선면 지족리 615-1	철재	남해군정	
90	19566	도근점	중부	250492.391	27.006	034°50'47.13234"	127°58'35.54853"	20221124	창선면 지족리 660	철재	남해군정	
91	18296	도근점	중부	255634.892	92.453	034°53'36.26744"	127°53'41.06306"	20221124	설천면 비란리 478-12	철재	남해군정	
92	18297	도근점	중부	255523.90	72.752	034°53'32.68900"	127°53'37.93016"	20221124	설천면 비란리 산105-4	철재	남해군정	
93	19527	도근점	중부	252631.076	110.564	034°51'56.03762"	127°59'36.37612"	20221012	창선면 옥천리 1018-1	철재	남해군정	
94	19528	도근점	중부	252553.914	104.433	034°51'53.52969"	127°59'36.88078"	20221012	창선면 옥천리 1005-1	철재	남해군정	
95	19529	도근점	중부	252406.024	99.822	034°51'48.71218"	127°59'39.16369"	20221012	창선면 옥천리 993-5	철재	남해군정	
96	19530	도근점	중부	252369.693	99.741	034°51'47.52981"	127°59'39.58628"	20221012	창선면 옥천리 993-5	철재	남해군정	
97	19531	도근점	중부	252218.361	93.026	034°51'42.59158"	127°59'42.97263"	20221012	창선면 옥천리 965	철재	남해군정	
98	19532	도근점	중부	252164.404	88.296	034°51'40.84303"	127°59'42.68965"	20221012	창선면 옥천리 산85-2	철재	남해군정	
99	19533	도근점	중부	252100.927	89.935	034°51'38.79683"	127°59'41.03373"	20221012	창선면 옥천리 950-1	철재	남해군정	
100	13414	도근점	중부	240691.641	157.425	34° 45'28.03321"	128° 00' 46.8326"	20221021	삼동면 봉화리 산519-2	철재	남해군정	
101	13415	도근점	중부	240734.680	157.386	34° 45' 29.4357"	128° 00' 46.12415"	20221021	삼동면 봉화리 산507-2	철재	남해군정	
102	13416	도근점	중부	240753.330	156.126	34° 45' 30.03892"	128° 00' 46.35588"	20221021	삼동면 봉화리 산507-2	철재	남해군정	
103	13417	도근점	중부	240766.692	160.156	34° 45' 30.49183"	128° 00' 44.03305"	20221021	삼동면 봉화리 산507-2	철재	남해군정	
104	13418	도근점	중부	240725.836	180.836	34° 45' 29.2009"	128° 00' 39.84223"	20221021	삼동면 봉화리 산519-2	철재	남해군정	
105	13419	도근점	중부	240811.156	137.697	34° 45' 31.87449"	128° 00' 51.26464"	20221021	삼동면 봉화리 산517-20	철재	남해군정	
106	17467	도근점	중부	258320.385	22.907	034°55'04.36534"	127°51'28.42841"	20221109	고현면 차면리 831	철재	남해군정	
107	17468	도근점	중부	258346.650	22.867	034°55'05.21577"	127°51'28.69015"	20221109	고현면 차면리 573	철재	남해군정	
108	19534	도근점	중부	252670.733	2.739	034°51'56.7771"	128°00'42.7533"	20221026	창선면 상신리 347-1	철재	남해군정	
109	19535	도근점	중부	252663.455	2.744	034°51'56.5162"	128°00'45.7232"	20221026	창선면 상신리 10-1	철재	남해군정	
110	19536	도근점	중부	252564.030	2.838	034°51'53.3063"	128°00'43.7671"	20221026	창선면 상신리 1-30	철재	남해군정	
111	19537	도근점	중부	252467.496	3.041	034°51'50.1677"	128°00'44.5057"	20221026	창선면 상신리 1-34	철재	남해군정	
112	19538	도근점	중부	252497.843	1.671	034°51'51.1309"	128°00'47.0892"	20221026	창선면 상신리 1-34	철재	남해군정	
113	19539	도근점	중부	252345.798	3.470	034°51'46.1944"	128°00'47.4250"	20221026	창선면 상신리 1-27	철재	남해군정	

남해군 고시 제2022-16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 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천천 보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공사는 기존 하천 하폭부족, 기설 제방 및 호안이 노후하거나 낮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일반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하천정비(하천개수 B=7.0m~12.0m, L=139.4m(우안L=139.4m, L=80.3m) BOX라멘교(W5.0m(11.0)xH1.7mxL12.0m)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22. 12. ~ 2023. 06.
-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조
-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비치
-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삼동	동천	969	답	887	100	하*영	경남 진주시 망*동1*1-18
2	남해	삼동	동천	968-1	답	1,600	155	박*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번가길2*-25
3	남해	삼동	동천	968-2	답	922	170	임*호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57번길*-3
4	남해	삼동	동천	967	답	668	249	임*호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57번길*-3
5	남해	삼동	동천	965	답	919	212	임*호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57번길*-3
6	남해	삼동	동천	952	답	1,134	676	최*일	남해군 삼동면 동*리 1*17
7	남해	삼동	동천	1074-1	답	501	2	강*수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11*-20
8	남해	삼동	동천	949	답	1,676	208	김*신외 2인	통영시 광도면 신죽1길 1* *01동 *005호
9	남해	삼동	동천	950	답	1,375	179	김*신외 2인	통영시 광도면 신죽1길 1* *01동 *005호
10	남해	삼동	동천	951	답	1,352	289	최*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5
11	남해	삼동	동천	948	답	1,398	19	이*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8
12	남해	삼동	동천	2042	구	26,104	55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38,536	2,813		

남해군 고시 제2022-161호

평산2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에 의거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2,130,000천원(국비 1,602,000, 지방비 528,000), 자부담 별도(89,488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인프라 : 마을안길 정비 1식, 가드레일 설치(90m), 상수도개량 1식, 재래식 화장실 정비(당초 22호 → 변경 24호)
- 주택정비 지원 : 빈집정비(당초 11호 → 변경 15호), 슬레이트지붕개량(당초 38호 → 변경 37호), 집수리(당초 8호 → 변경 2호)
- 마을환경 개선 : CCTV 설치(1식), 보안등 설치(6개소)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마을리더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 ()외서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130,000	1,602,000	528,000	(89,488)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소 계		1,120,576	896,462	224,114	(89,488)
	▪ 마을안길정비	1식	687,772	550,218	137,554	
	▪ 가드레일설치	90m	4,676	3,741	935	
	▪ 상수도개량	1식	106,257	85,006	21,251	
	▪ 재래식화장실정비	24호	321,871	257,497	64,374	
주택정비	소 계		609,827	423,547	186,280	(89,488)
	▪ 빈집정비	15호	142,018	99,413	42,605	
	▪ 슬레이트지붕개량	37호	440,901	304,222	136,679	(85,466)
	▪ 집수리	2호	26,908	19,912	6,996	(4,022)
마을환경 개선	소 계		50,578	40,463	10,115	-
	▪ CCTV 설치	1식	14,921	11,937	2,984	
	▪ 보안등설치	6개소	35,657	28,526	7,131	
휴먼케어	소 계		34,250	23,976	10,274	-
	▪ 치매예방 프로그램	1식	8,350	5,845	2,505	
	▪ 건강생활체조프로그램	1식	4,175	2,923	1,252	
	▪ 문화예술 프로그램	1식	13,525	9,468	4,057	
	▪ 백서제작	1식	8,200	5,740	2,460	
주민역량 강화	소 계		24,050	16,835	7,215	-
	▪ 마을리더육성교육	1식	8,350	5,845	2,505	
	▪ 주민역량강화교육	1식	8,350	5,845	2,505	
	▪ 선진지견학	1식	7,350	5,145	2,205	
제경비	소 계		290,719	200,717	90,002	-
	▪ 기본 및 세부설계비	1식	94,971	66,480	28,491	
	▪ 공사감리비	1식	108,441	75,909	32,532	
	▪ 사업관리비	1식	23,870	16,709	7,161	
	▪ 잡지출	1식	63,437	41,619	21,818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6. 사업기간 : (당초) 2019년 ~ 2022년(4년간) → (변경) 2019년 ~ 2023년(5년간)

7. 기타(시행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055-860-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602호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남 해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606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이동 초음	50,000	2022.12.10 2032.12.09 (10년)	남해군 이동면 초음	고모어촌계	213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7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이동 초음	100,000	2022.12.10 2032.12.09 (10년)	남해군 이동면 초양	초양어촌계	214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8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상주 상주	20,000	2022.12.10 2032.12.09 (10년)	남해군 상주면 상주	상주어촌계	215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09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상주 양아	20,000	2022.12.10 2032.12.09 (10년)	남해군 상주면 양아	소량어촌계	216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10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상주 양아	20,000	2022.12.10 2032.12.09 (10년)	남해군 상주면 양아	대량어촌계	217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11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남해 선소	60,000	2022.12.10 2032.12.09 (10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 5407동1404호 (이의동,자연엔 힐스테이트)	최현준	218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12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남해 선소	60,000	2022.12.10 2032.12.09 (10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32번길 6	최원근	21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13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지족	50,000	2022.12.10 2032.12.09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49번길 1-15	공명희 외1 (박선희)	220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614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22.12.10 2032.12.09 (10년)	사천시 상강청길 14, 101동205호	오태훈 외1 (박현영)	221호 재개발

※ '22/23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업 면허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213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이동 초읍	50000	2012.12.10 2022.12.09	남해군 이동면 초읍	고모어촌계	
남해양식 제214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이동 초읍	100000	2012.12.10 2022.12.09	남해군 이동면 초양	초양어촌계	
남해양식 제215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상주 상주	20000	2012.12.10 2022.12.09	남해군 상주면 상주	상주어촌계	
남해양식 제216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상주 양아	20000	2012.12.10 2022.12.09	남해군 상주면 양아	소량어촌계	
남해양식 제217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상주 양아	20000	2012.12.10 2022.12.09	남해군 상주면 양아	대량어촌계	
남해양식 제218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남해 선소	60000	2012.12.10 2022.12.09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65, 5407동1404호 (이의동,자연엔 힐스테이트)	최현준	
남해양식 제219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남해 선소	60000	2012.12.10 2022.12.09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32번길 6	최원근	
남해양식 제220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지족	50000	2012.12.10 2022.12.09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49번길 1-15	공명희 외1 (박선희)	
남해양식 제221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12.12.10 2022.12.09	사천시 상강청길 14, 101동205호	오탈훈 외1 (박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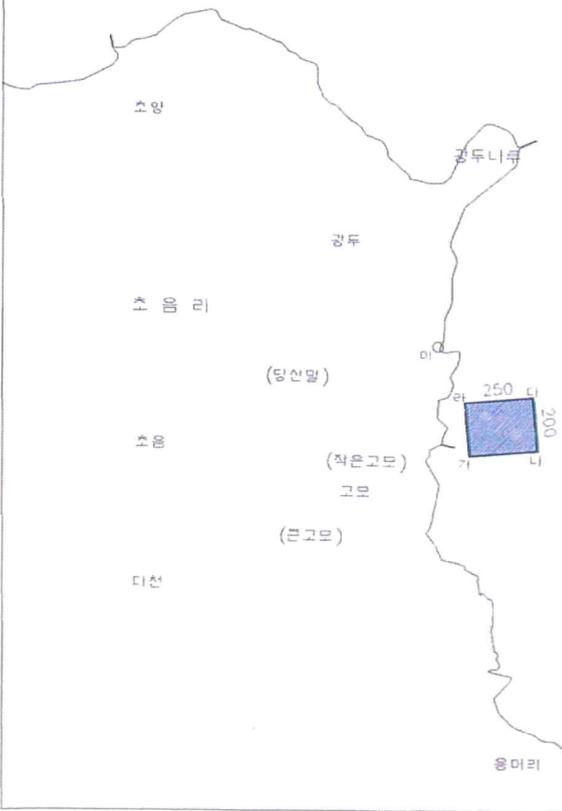
남해군영새 제 606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고모지선
-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 (마) N34-49-19.16, 127-56-28.70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49-05.995	127-56-33.441	가-나 250
나	34-49-06.725	127-56-43.233	나-다 200
다	34-49-13.188	127-56-42.490	다-라 250
라	34-49-12.458	127-56-32.698	라-가 2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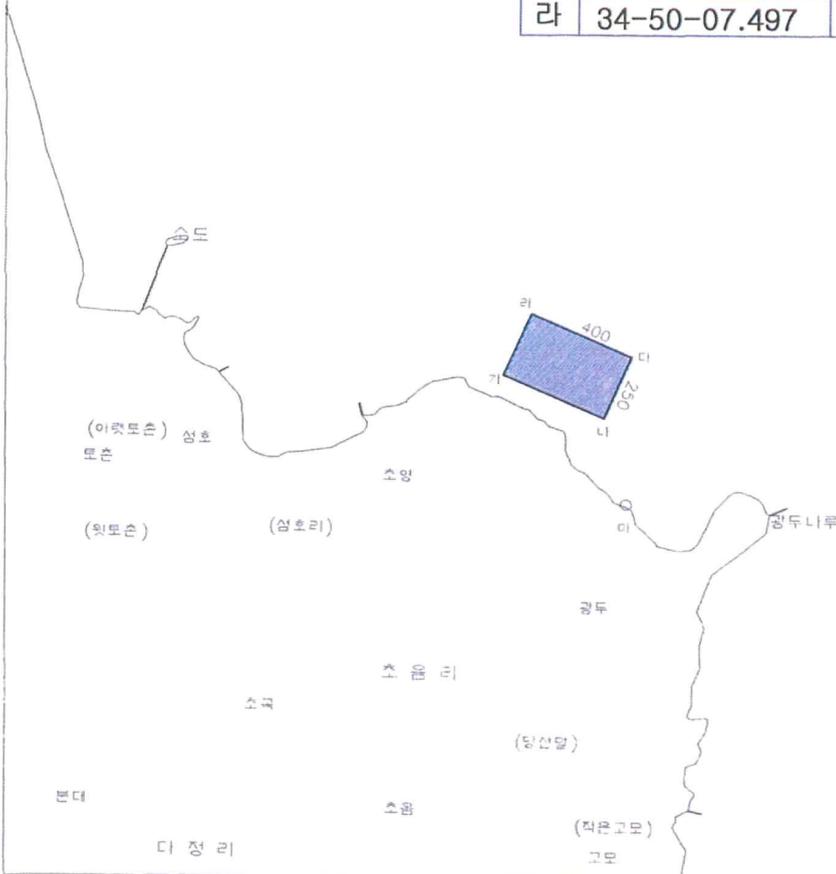


남해양식 제 607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초양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 (마) N34-49-44.511, E127-56-19.97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0-00.041	127-56-02.301	가-나 400
나	34-49-54.929	127-56-16.770	나-다 250
다	34-50-02.385	127-56-20.644	다-라 400
라	34-50-07.497	127-56-06.175	라-가 25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8



남해 양식 제 608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닥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상주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마) N 34-42-40.99, E 127-59-15.1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42-38.59	127-59-09.00	가-나	200	
나	34-42-35.34	127-59-16.86	나-다	100	
다	34-42-35.34	127-59-16.86	다-라	200	
라	34-42-38.59	127-59-16.86	라-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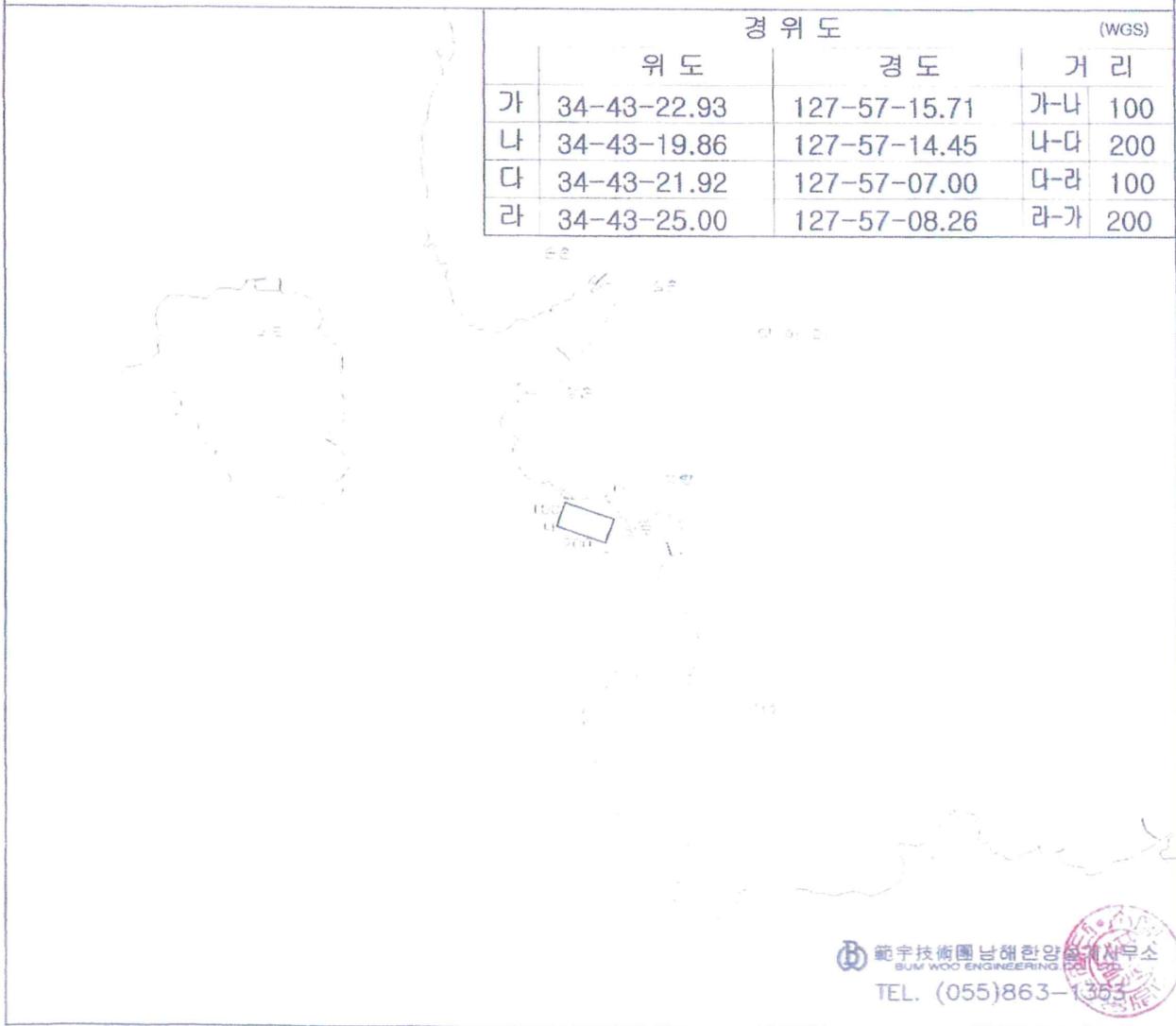


남해 양식 제 609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닥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소량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마) N 34-43-25.72, E 127-57-15.1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²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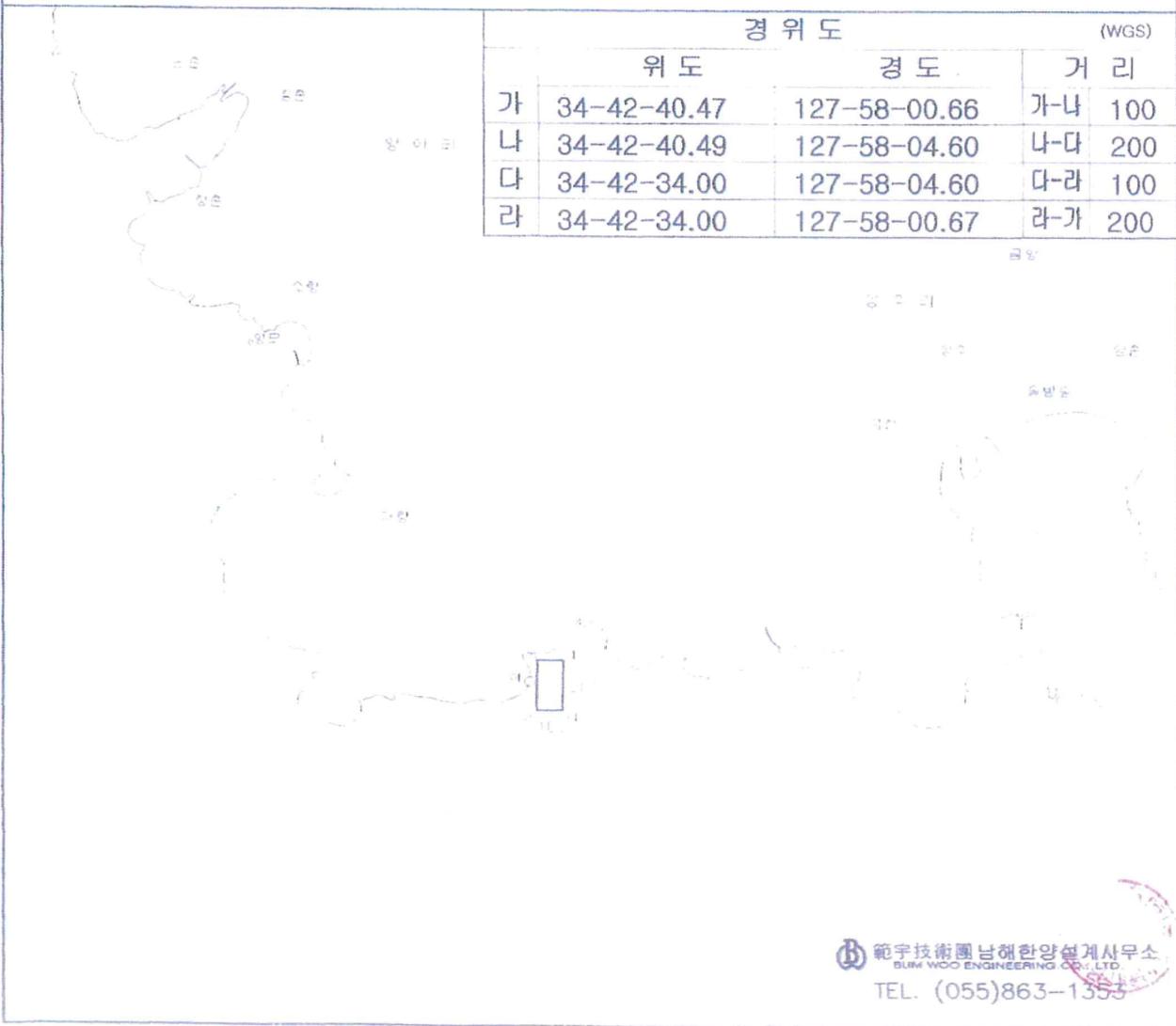


남해 양식 제 610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닥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대량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마) N 34-42-37.68, E 127-57-59.55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²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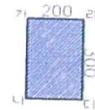


남해양식 제 61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마) N N34-51-03.301, E127-54-33.49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1-26.737	127-56-16.864	가-나 300
나	34-51-17.002	127-56-16.793	나-다 200
다	34-51-16.901	127-56-24.664	다-라 300
라	34-51-26.636	127-56-24.736	라-가 2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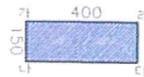
남해양식 제 612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 (마) N N34-51-03.301, E127-54-33.49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1-09.798	127-56-03.271	가-나	150
나	34-51-04.930	127-56-03.291	나-다	400
다	34-51-04.976	127-56-19.035	다-라	150
라	34-51-09.843	127-56-19.015	라-가	4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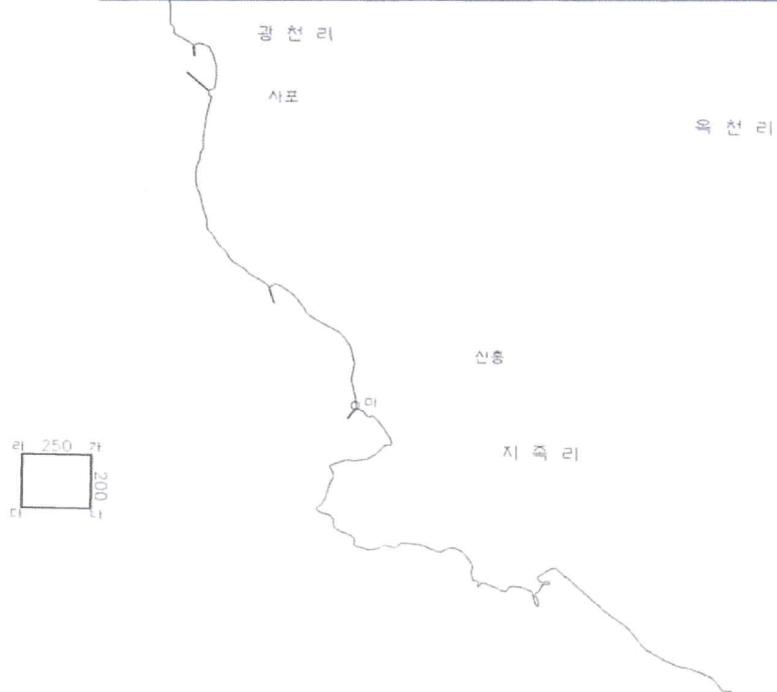
남해양식 제 613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 (마) N34-50-49.189, E127-58-15.20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0-42.885	127-57-38.004	가-나 200
나	34-50-36.396	127-57-37.973	나-다 250
다	34-50-36.403	127-57-28.134	다-라 200
라	34-50-42.893	127-57-28.165	라-가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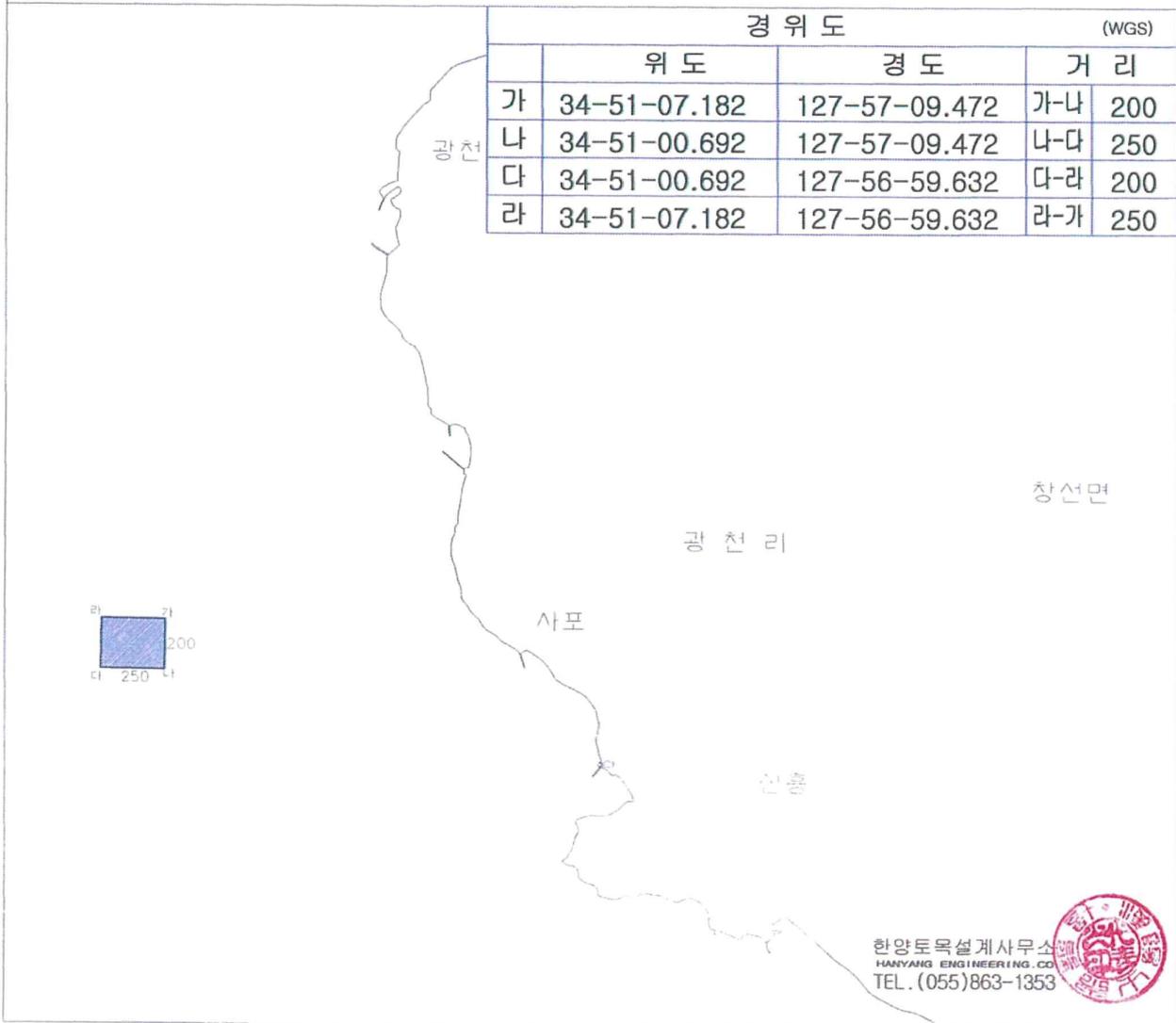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614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 (마) N34-50-49.189, E127-58-15.20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2-1627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국도2호선 진주 내동 독산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국도2호선 진주 내동 독산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명 칭 : 국도2호선 진주 내동 독산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

다. 사 업 량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L=0.03km

라. 사업시행자 : 진주국토관리사무소(경남 진주시 남강로 50(평거동 695-9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12. 9. ~ 12. 23. (14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669호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남해군의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2월 15일 ~ 2023년 1월 4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수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우)52425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수산자원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987, FAX : 055-860-370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가공팀(☎055-860-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남해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수산인,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판매 및 할인행사 등) 및 유통 활성화, 물류 개선사업 등 지원
3. 패류 지역특화품종 및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
4. 경남추천상품(QC), 남해다름 등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5.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가공사업
6.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8. 멸치액젓 가공 및 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물품, 장비, 기자재 등 지원
9.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0. 고부가가치 수산식품개발사업
11. 그 밖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169호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지역내 먹거리순환 체계를 구축·확산하여 유통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농촌에 고령농·여성농·청년농 등 취약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군수) 1명,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정책 관련 담당업무 부서장 및 팀장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12월 8일~ 12월 28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유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우)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유통지원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31, FAX : 055-860-39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먹거리지원팀(☎055-860-39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통하여 남해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제조·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남해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 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군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지정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관련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남해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 1. 먹거리 전략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정책 관련 담당 업무 부서장 및 팀장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남해군의회 의원
 - 나. 남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 마. 그 밖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지원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먹거리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